65 의료기관 간호업무 종사자에서 발생한 계류유산

성별	여성	나이	29세	직종	간호직	직업관련성	높음
----	----	----	-----	----	-----	-------	----

1 개 요

근로자 ○○○은 2002년 □의료원에 입사하여 2009년까지 병동 간호업무를 수행하던 중, 2010년 2월 재태주수 4주경 임신을 인지하였고, 이후 9주째 산부인과 내원하여 시행한 정기검진상 태아심음이 들리지 않아 계류유산을 진단받고, 치료적 소파술을 시행받았다.

2 작업환경

○○○은 2002년 12월 □의료원에 입사하여 2010년 3월까지 약 7년 3개월간 병동에서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. 근로자는 3교대 근무를 수행하였고, 병동에서 입원환자를 위해 정제의 투여약물을 빻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약물 분진에 노출되었다.

3 해부학적 분류

- 생식계질환

4 유해인자

- 화학적요인(기타화학물)

5 의학적 소견

근로자는 이전에 특별한 산부인과 문제나 유산의 과거력은 없었으며, 음주력 및 흡연력은 없었다. 또한, 배우자의 특이 질병 과거력 및 흡연력은 없었다. 근로자는 2010년 2월 재태주수 4주경 임신을 인지하였고, 이후 9주째 산부인과 내원하여 시행한 정기검진 상 태아심음이 들리지 않아 계류유산을 진단받고, 치료적 소파술을 시행받았다.

6 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는 의료기관의 병동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임신 4주에 임신을 인지할 때까지 3교대 근무를 수행하였으며, 소속 기관의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고용불안, 임금 미지급 등 특수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다. 또한, 소량이기는 하지만 유산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약물 분진에 노출되었던 점이 시기적으로 볼 때 근로자의 계류유산 발생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,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. 끝.